

2022.08.0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 2022.8.18.] [법률 제18426호, 2021.8.17., 일부개정]

공인노무사 김경민

➤ 핵심 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
-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상 휴게시설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가 어려운 바, 이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시행령에 따라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개정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 및 제175조)

➤ **적용 범위** ※ 해당 내용들은 시행령 개정령안으로 입법 예고된 바 확정되지 않음.

- ①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대금이 20억 이상인 사업장)
 ②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산재예방정책과3066, 2021.06.25)

- ㄱ. 전화상담원(39912)
- ㄴ.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
- ㄷ. 텔레마케터(5313)
- ㄹ. 배달원(922)
- ㅁ.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 ㅎ. 아파트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대금이 50억 미만인 사업장)은 2023. 8. 18.부터 적용

예시) A 회사 ‘ㄱ 공장’에 상시근로자 15명, ‘ㄴ 공장’에 상시근로자 30명이 있으면 ‘ㄴ 공장’에만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함. ‘ㄴ 공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2023.8.18.이후 발생.

➤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 해당 내용들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으로 입법 예고된 바 확정되지 않음.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최소 면적 6m²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



화재·폭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여름철 20~28°C, 겨울철 18~22°C 유지.
 냉난방 기능 필수.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



조명은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능 갖출 것.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비품 및 설비>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추어 줄 것.

<휴게시설 관리>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 시 소독.



휴게시설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 그 밖에 휴게
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해당 내용들은 시행령 개정령안으로 입법 예고된 바 확정되지 않음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5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의 의의

- 해당법령이 영세한 사업주들에게는 휴게시설 설치 및 조성에 대해 금전적·공간적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임. 하지만 과태료 부담이 휴게시설 설치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휴게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판단됨.
- 또한 휴게시간과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구별하는 판단기준들 중 하나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여부'가 포함되는 바(대법원 2017.12.05. 선고 2014다74254 판결), 해당 개정안으로 휴게시설 설치 및 조성이 보편화된다면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구분의 모호함이 어느 정도 사라져서 향후 임금 관련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전망됨.

➤ 관계법령

■ 개정『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 (신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정『산업안전보건법』제175조 (과태료 조항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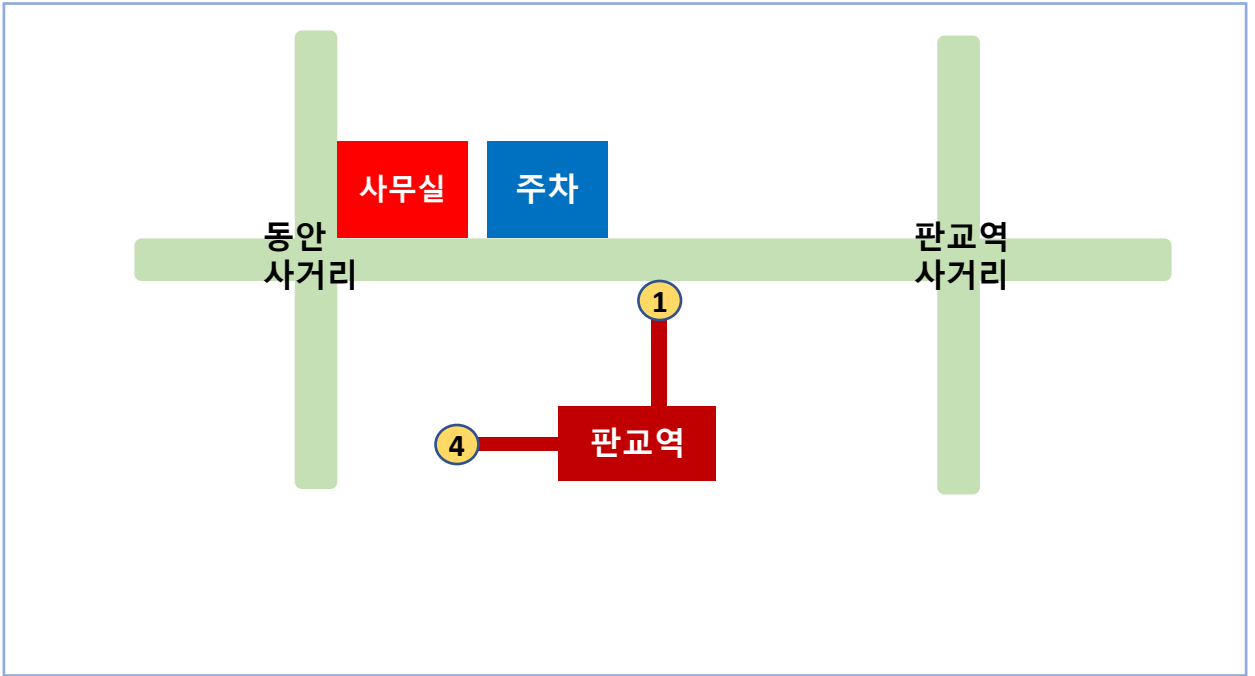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64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2. 제1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78, 801호 (삼평동, 서건타워)

주차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31 (삼평동, 호반메트로큐브)

지하철 : 신분당선 판교역(판교테크노밸리) 1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10분 거리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또는 의견은 당 노무법인이나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또는 소속 공인노무사의 공식적인 검토의견이나 자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우측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관련하여 회원사가 아닌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월~금 09:00~18:00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

전화 031-704-1223
팩스 031-8016-3498

양재모 대표 공인노무사
cpla21@hanmail.net

김재연 공인노무사
cplaeony@naver.com

황금별 공인노무사
golds628@naver.com

김경민 공인노무사
cplakkm@naver.com